

양돈협회 양돈농가 상담 코너

양돈협회는 양돈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양돈농가 상담코너를 마련하여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들 상담건수 중 주요 사안을 선별하여 게재코자 한다. - 편집자 주 -



◎ 상담사례 1 : 강원도 철원에서 문의한 내용으로 농장구입후 주민민원으로 인한 경영문제에 관한 문의였다. 전 농장 사장이 분노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과의 마찰이 있었고 농장이 경매를 통해 매매 됐다는 소리를 듣고 주민들이 플래카드를 걸고 농장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군청직원과 군수까지 나와 보상을 해줘서라도 농장을 폐쇄시키겠다고 주민들과 약속을 한 상태이며 농장 경영을 꼭 해야 한다면 철원군 조례에 따라 농장 반경 150m 안에 인가가 있는 경우 50두 이하의 돼지만 사육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이다. 이에 본 농가에서는 군 조례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농장을 구입해 비용을 피해 볼 상황인데 농장 경영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문의하였다.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신축하는 농장에 한해서만 동 조례가 적용되는데 본 농장은 2001년 4월경 허가를 받았고 조례는 2003년경 생겼다. 경매를 통해 농장을 인수하였다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 변경신고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조례시기가 늦으므로 조례 해당이 안된다. 시기상 문제가 있다며 허가를 취소했다면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상담사례 2 : 경남 울산에서 문의한 내용으로, 중국인의 취업에 관한 문의였다. 중국 국적의 60세를 넘긴 남자가 국내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였다. 국내에 딸 2명을 출가 시킨 상태이며 양돈장에 취업을 원하고 있다. 이분을 양돈장에서 고용하고자 하는데 이분이 해외동포가 아닌지 고용에 있어 불법이 아닌지에 대해 문의를 했다.

해외동포는 국내에 인척이 있는 것과 무관하며, 조상이 우리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 호적 등)가 있거나 중국에서 한인 학교를 졸업했다는 증명이 있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의한 내용은 해외동포인지, 아닌지는 불확실한 경우인 것 같다. 단순히 딸을 한국에 출가시켰다고 해서 해외동포가 되지는 않는다. 또한 해외동포가 취업을 하려면 관광비자가 아닌 친척 방문으로 들어와야 하며,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취업을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상기의 경우,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취업하려고 한다면 해외동포와 무관하게 무조건 불법이다.

<양돈농가 상담코너 - 양돈농가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을 양돈협회에서 상담해 드리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드립니다. • 문의 : 대한양돈협회 지도부 전화 : 02-581-9751~4, 팩스 : 02-581-9768>